

제19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

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(부록)

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

부 록 목 차

1.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면

의안 번호	1324
----------	-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7. 2. 1. (수)
- 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7. 2. 2. (목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7. 2. 10.(금)

2. 개정이유
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」에서 2017년 참전명예수당 시비 보조금이 상향 지원됨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사업 명예수당 “월 5만원”을 “월 6만원”으로 지급금액 변경 (안 제4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5. 검토의견

- 2017년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이 상향 지원됨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」에 따라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 및 보훈 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지원금을 증액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〈 관 계 법 령 〉

□ **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**

제12조의2(보조금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□ **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

제83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